

對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운영지침

2024. 5.



농림축산식품부

1. 개 요

□ 목 적

- 대만 수출용 포도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통해 포도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

< 그동안 경과 >

- ('24.2월) 대만으로 수출된 한국산 포도에서 잔류농약 검출('23년 7건, '24.1~2월 13건)
- ('24.2월) 대만(식약서)에서 한국산 신선포도 수출업체(15개사) 대상으로 수입검사 신청 수리를 잠정중단하는 조치 공지('24.2.29.~'24.3.28.)
- ('24.3~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및 포도 수출업체 회의 수차례 개최 및 의견수렴, 제도 도입 사전예고 등

- ⇒ 한국산 포도 주요 수출국인 대만의 안전성 관리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출단계 전반에 대한 안전성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

□ 주요 내용

- 선제적 사전등록제 시행으로 대만 수출용 포도 경쟁력 제고
 - (농약안전사용교육) 포도 사전등록제 등록을 통해 대만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수출 포도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 (ID관리)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에 개별 등록번호(ID) 발급 및 관리로 수출 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검역 연계 실효성 강화) 포도 사전등록제에 등록하고 대만 수출 안전성 기준에 부합한 안전성검사 성적서를 제출한 수출업체에 한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잔류농약 위반 사전 방지
- 민관협력을 통한 수출용 포도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 (정부기관) 제도 운영, 농약안전사용 교육, 잔류농약 검사, 위반업체 제재 등
 - (수출통합조직) 연간 대만 포도 수출 수요조사, 생산자단체 및 농가 교육이수 관리, 잔류농약 검사 안내 등
 - (수출업체) ID신청(생산자단체, 농가 포함) 및 검역 관리
 - (생산자단체*) 농약안전성교육 이수 등 농가 관리, 생산단계 안전성 관리 등

*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 단위

2. 사전등록 절차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담당기관					
㉠안전성 교육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대만 수출포도 안전성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홍보 ○ 수출국별 농약사용가이드라인 제작·농약정보 공유 * (분기별) 권역단위 교육 / (수시) 수출업체생산자단체농가 요청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교육 이수증 (재)발급 및 교육이수 정보 유관기관 공유	농진청 (수출농업 지원과)					
	교육이수	○ 농진청 주관 안전성 교육 이수(연 1회, 4시간 이상) * 농가의 교육이수 실적은 생산자단체가 관리 * 통합조직이 생산자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					
㉡ID관리	ID신청	○ ID신청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소재지 aT 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table border="1"><thead><tr><th>신 청 서 류</th></tr></thead><tbody><tr><td>① 대만 수출 포도 사전제등록제 등록 신청서</td></tr><tr><td>② 생산자단체 자체 안전성 관리 계획</td></tr><tr><td>③ 대만 수출포도 거래농가 명단</td></tr><tr><td>④ 거래농가 농지원부 사본(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중 대체 가능) 등 * 상세내용은 4페이지 신청서류 참고</td></tr></tbody></table>	신 청 서 류	① 대만 수출 포도 사전제등록제 등록 신청서	② 생산자단체 자체 안전성 관리 계획	③ 대만 수출포도 거래농가 명단	④ 거래농가 농지원부 사본(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중 대체 가능) 등 * 상세내용은 4페이지 신청서류 참고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신 청 서 류							
	① 대만 수출 포도 사전제등록제 등록 신청서							
	② 생산자단체 자체 안전성 관리 계획							
③ 대만 수출포도 거래농가 명단								
④ 거래농가 농지원부 사본(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중 대체 가능) 등 * 상세내용은 4페이지 신청서류 참고								
ID심사	○ 신청서류 일치 및 적합 여부 심사, aT 본사에 심사결과 보고	aT (지역본부)						
ID등록	○ 적격업체 ID등록 및 관리	aT (본사)						
ID관리	○ ID 현황자료(월별 주기 업데이트) 및 유관기관(검역본부, 농관원, 농진청 등) 공유							
㉢잔류농약 검사	잔류농약 검사 신청	○ 수출 15일 전 농관원(농지 소재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잔류농약 검사 신청 * 검역증 발급 신청 시 안전성검사 성적서(법정증명서) 필수 제출(안전성검사 약 10일, 검역증 발급 약 5일 소요) * 연초에 생산자단체는 ID등록(갱신 포함)을 위한 안전성검사 수요를 통합조직을 경유해 농관원에 제출하여야 함 * 검사 수요 급증 시 농관원 지정 검정기관을 통해 검사 가능	생산자단체 (농가)					
	잔류농약 검사	○ 잔류농약 검사 실시 * 부적합시 추가 검사 불가(포도 특성 및 농약허용기준 등 감안) *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농관원 (소비안전과)					
㉣검역	검역 신청	○ 對대만 포도 수출 5일 전 ID정보 및 안전성검사 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인터넷 신청 또는 소재지 관할 검역본부 방문신청)에 검역증 발급 신청	수출업체					
	검역증 발급	○ ID등록 여부, 안전성검사 성적서, 첨부서류 확인 및 검역 절차 등을 거쳐 검역증 발급(소재지 관할 검역본부)	검역본부 (수출지원과)					
	검역증 활용	○ 발급 받은 검역증을 수출국(대만 바이어)에 제출	수출업체					
㉤제재	잔류농약 검출	○ 수출국 통관 중 잔류농약 검사 허용기준 위반 시 - (ID) 삭제, 1~3년간 등록제한 - (패키지) 차년도 배정액 산출시 위반 해당국·해당품목 실적 제외 *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내용 상이	aT (본사)					
	기타	○ (교육미이수)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ID삭제 등 조치 ○ (혼입수출 등) 등록취소 및 재등록 불가						

3. 안전성 교육

□ 교육 운영

-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대만 수출용 포도 안전성 교육과정 운영
 - (내용) 대만잔류농약 허용기준, 생육관리, 수출 관련 주의사항 등
 - (주기) 분기별로 교육을 추진하되 현장 수요에 따라 수시교육 실시
 - (홍보) 수출통합조직, 지자체 등에 교육계획 공유
 - (기타) 교육 이수증 (재)발급, 교육 미이수 정보 공유 등 교육 관련 제반사항
- * 상황에 따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 가능

□ 교육 이수

-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는 ID 등록 및 유지를 위해 안전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육시간) 1년 단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ID삭제·등록제한 등 제재
 - (이수증 관리) 생산자단체(포도 수출통합조직)는 소속 농가의 안전성 교육 이수증을 별도로 관리·보관
- * 수출통합조직이 생산자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4. ID 운영

□ ID 정의

- (ID 정의)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도에 등록된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에 부여하는 일련의 고유번호
- (ID 체계) 수출업체, 등록연도, 생산자단체, 생산농가 등 10자리로 구성

구분	수출업체	등록연도	생산자단체	생산농가
자릿수	2	2	2	4

-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생산농가 ID는 등록순으로 배정

□ ID 관리주체

- ID등록, 추가, 내역 변경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은 aT가 담당

□ ID 신청

- (대상) 대만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업체
- (신청방법) 수출업체가 소재지 aT 지역본부로 신청서류를 제출
 - * 포도 생육 및 재배기간을 감안하여 농가 등록신청 3개월 후부터 검역신청 가능 (제도 도입 연도인 '24년은 예외)
- (등록단위)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에 각각 발급
 - 생산농가는 사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나의 생산자단체에만 등록 가능(복수의 생산자단체에 등록 불가)
 - *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상호 간 복수 등록 가능, 기 등록한 수출업체(생산자 단체) 외 다른 생산자단체(수출업체)와 매칭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규등록 필요
 - 등록농가의 정보는 농지원부 등의 정보와 일치 여부 확인 후 제출
 - * 농가등록 단위는 개별 농가 기준

< ID 신청서류 >

- ① 신청공문(자사양식) 및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 ②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각각 작성
- ③ 생산자단체 자체 안전성관리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 ④ 대만 수출포도 거래농가 명단 <별지 제3호 서식(엑셀 제출 가능)>
 - * 법인명으로 농가 등록 시 농가 명단 전부 기재
- ⑤ 대만 수출 포도 농가 농지원부 사본(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중 대체 가능)
-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수출업체·생산자단체·농가별) <별지 제4호 서식>
- ⑦ 무역정보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기 제출시 제외

□ ID 등록

- (심사) aT 지역본부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aT 본사로 보고
- (등록) aT 본사에서는 대만 수출 포도 관련 안전성교육 이수 등을 확인하고, 적격 수출업체(생산자단체, 농가)에 한하여 ID 등록
 - (결과통보) aT 지역본부에서는 신청 수출업체에 등록 결과를 통보
- (ID 관리) aT 본사에서는 ID 현황자료를 월별 주기로 업데이트하여 유관기관에 공유
 - * 수출국 안전성 이슈 등 필요 시 유관기관 합동 불시점검 가능(농약 및 안전성 관련 기본점검)

□ ID 농가 추가 및 변경

- (농가 추가) ID를 보유한 수출업체가 신규 생산자단체(농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에 필요한 서류를 aT 지역본부에 제출·신청
 - * 제출서류 : 「신청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생략), ②(생산자단체추가시에만), ③, ④, ⑤, ⑦
 - (심사) aT 지역본부에서는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농가 중복 여부 확인 등)를 aT 본사에 보고
 - (통보) aT 본사에서는 aT 지역본부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적합 시에 ID 추가(변경) 처리 및 결과 통보
- (농가 변경) 농가 삭제, 이동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업체는 aT 지역본부로 변경 신청
 - 생산농가가 소속 생산자단체를 이동하는 경우, 수출업체가 이전 생산자단체 확인(동의)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청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생략), ②, ③, ④, ⑤
 - 생산자단체가 소속 생산농가 계약 해지에 따라 안전성관리 계획 등 당초 신청한 내용과 다른 변경이 있을 경우, 수출업체를 통해 변경신청
 - ※ aT 지역본부 점검결과, ID보유 수출업체가 2년 이상 대만 포도 수출실적이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 ID 삭제 처리 보고

5. 잔류농약검사

□ 검사신청

○ 생산자단체는 수출 15일 전 농가의 잔류농약검사 신청

* 안전성검사 약 10일, 검역증 발급 약 5일 소요

- (검사기관) 농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로 신청

* 검사 수요 급증으로 인해 검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농관원 지정 검정기관을 통해 검사 가능(별지 제7호 서식의 검정증명서 활용)

** 잔류농약 분석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농관원을 통한 재검사 신청 불가

□ 잔류농약검사 결과서 활용 등

○ (결과서 제출) 수출업체는 안전성 검사 성적서(농관원 안전성분석 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만 수출검역
신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 ※ 미제출 시 식물검역증 발급 불가

○ (사전 수요조사) 연초에 생산자단체는 수출통합조직(한국포도수출연합)을
경유하여 ID등록(갱신 포함) 농가의 검사 수요조사 결과를 농진청, 농관원,
aT에 제출해야 함

□ 잔류농약 검출 시 조치사항 보고

○ (잔류농약 검출) 국내 또는 수출국 통관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수출업체는 aT에 위반내역 보고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출내역 자료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국내) 수출업체는 원인분석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aT 지역본부에
제출하고, 조치사항을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 (수출국 통관과정) 수출업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안전성 위반내역
(사실관계조사서)을 aT 지역본부에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6. 검역

□ 검역 신청

- 수출업체가 ID정보(수출업체·생산자단체·농가) 및 잔류농약검사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검역증 발급

- 검역본부에서 수출업체(생산자단체·농가)의 ID등록 여부, 잔류농약검사 서류를 확인하고, 검역절차 등을 거쳐 검역증 발급(소재지 관할 검역본부)

7. 위반 제재

□ 수출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 ID이용 제재

위반횟수	제재 내용	비 고
1회	ID삭제, 1년간 등록제한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에 동일하게 적용
2회	ID삭제, 2년간 등록제한	
3회이상	ID삭제, 3년간 등록제한	

* 위반사실 관계 조사결과, 위반 원인이 타 농지로부터의 '비산'일 경우에는 해당 생산농가만 삭제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사업 제재

위반횟수	제재 내용	비 고
1회	차년도 배정액 산출 시 최근 1년간 대만 포도수출 실적 제외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에 동일하게 적용
2회	차년도 배정액 산출 시 최근 2년간 대만 포도수출 실적 제외	
3회이상	차년도 배정액 산출 시 최근 3년간 대만 포도수출 실적 제외	

* 수출국 통관 중 검역에 불합격되었으나 자진 신고한 경우, ID 이용 제재 기간 및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사업 제외 실적의 1/2 경감

□ 의무교육 미이수

○ 등록제한, ID삭제

위반횟수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
1회	경고	경고	ID삭제, 1년간 ID등록 제한
2회	1년간 생산자단체 추가 제한	1년간 농가추가 제한	ID삭제, 2년간 ID등록 제한
3회이상	ID삭제, 1년간 ID등록 제한	ID삭제, 1년간 ID등록 제한	ID삭제, 3년간 ID등록 제한

□ 기타 위반

- 타 생산자단체 ID 도용 및 미등록된 재배지의 생산품과 혼입 수출, 제출내용 허위신고 및 제출계획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 ID등록 취소 및 ID재등록 불가 조치

- 상기 이외 위반사항의 경우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따름

8. 관계기관별 역할

- (농식품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 및 안전성 관리 총괄
- (aT)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운영, ID 심사·관리 및 제재, 중앙안전성위원회 운영 등
-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사용매뉴얼 제작 및 배포, 농약안전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가 대상 안전성검사 실시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 ID등록 현황 및 안전성검사 실적 확인, 검역증 발급 등
- (수출통합조직) 연간 대만 포도수출 수요조사, 생산자단체의 농가 교육관리 등

9. 기타사항

-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aT본사 방침, 중요사항은 중앙안전성위원회에서 처리함

10. 지침 적용시기 : 즉시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신규등록/농가추가) 등록신청서

수출업체명 (생산자단체명) *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각각 제출	한 글				
	영 문				
	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한 글				
	영 문				
주 소	한 글	도로명 주소로 작성			
	영 문				
연락처	전 화			FAX	
	휴대폰	대표		담당자	
	E-mail				
당사는 정부의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에 따라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등록 (신규등록/농가추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중					

생산자단체 자체 안전성관리 계획

생산자단체명		대표이사	(서명)
--------	--	------	------

I. 농약 관리 및 검사			
관리 담당자		소 속	
□ 농약 공동구매 · 사용관리			
공동 구매처		구매 주기	
보관 방법			
○ 관리 계획 (예시) - 농약관리 및 검사에 대한 전담 관리담당자 지정 -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맞는 농약 구매 확인·사용·보관 - 농약에 대한 공동구매처, 구매주기, 보관방법을 작성			
□ 대만포도농약사용지침(농진청 발행) 및 기록대장 비치 및 기록			
관리 주기		보유 기간	2년
○ 관리 계획 (예시) - 대만수출포도 사전등록제 운영지침에 따른 농약사용 여부 기록(사용한 농약명 및 사용량) - 농약 사용 주기, 살포 횟수, 살포 간격 등 기록			
□ 자체 잔류농약검사 계획			
검사 주기	월 1회 이상	검사 시기	수출기간 중
○ 관리 계획 (예시) - 수출 선적 15일전 검사 신청(농관원) - 안전성 검사여부에 대해 생산자단체의 검사 실적 확인			

II. 거래농가 지도 · 관리			
관리 담당자		소 속	
□ 거래농가 지도계획			
방문 주기		방문 횟수	
지도 내용			
○ 관리 계획 (예시) - 매월 2회 계약농가 방문을 통한 안전성 교육 확인 및 독려			

<별지 제3호 서식> 대만수출포도 거래농가 명단(별도 엑셀양식으로 제출)

대만수출포도 거래농가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주소 (주거지)	연락처	주소(재배지)	재배면적 (㎡)	ID	수출기간 (월)
						신규등록시 가입불필요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대만 수출 포도 신규 ID 등록 및 관리 및 유관기관 정보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농가 정보(농가명, 재배면적, 재배지)

※ 주민등록번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설문조사 전문기관
- 제3자 제공목적 : 시행제도상 유관기관 정보 제공, 공공기관 정책자료
- 제3자 제공항목 :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 정보, 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3자 제공기관의 보유·이용기간 : 준영구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별지 제5호 서식>

* 우편발송, 온라인 신청 중 택1

① 온라인 신청 방법

수출지원사업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징구 간소화 서비스

[외부망] <http://www.trass.or.kr/at.jsp> 접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

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해 주세요.(제외)

확인하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

1068200944

확인하기

사업자 번호 106-02-00944

동의대부 **대동업**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동의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인증서 신청부터 관리까지
KTNET 공인인증센터

[오프라인 동의] 우편 접수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호로 775, 4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제출서류
1.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2. 인감증명서(원본)
3. 사업자 등록증(사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

1068200944

확인하기

사업자 번호 106-02-00944

동의대부 대동업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동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주)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출자당 사업당연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정보를 귀 당사로부터 제공하길 동의합니다.

구분	항목
제공목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자당사업연간
제공대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제공항목	신규번호, 신고일, 수출일, 신고일, 수출자, 회사, 제조자 통관MS CODE, 수출입액(달러), 수출입액(달러), 수입국 통관일, 신고일, 수출입액 등 무역통계자료
유효기간	2019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비밀유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동의합니다. **사업자 공인인증 동의**

② 우편 제출 방법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 1)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 2) 증명서 발급기관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W)],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 년 월 일 ~ 별도 조치시까지
- 4)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 . .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 1부.

2.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끝.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연락처 : 02-2140-0732) * 지원 생산자단체 직접 우편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대만수출포도 안전성 위반내역(사실관계조사서)

대만수출포도 안전성 위반내역

1. 위반내역

○ 위반내역 개요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		국내검사	
단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단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이 름 (아이디)	주 소	기관	일자

○ 위반 내역

품 목	선적일	선적량 (kg)	위 반 내 역						
			위반성분	검출치 (ppm)	국내허용 기준(ppm)	수출국허용 기준(ppm)	수출국	항구	위반일자

2. 위반 경위

- 농약사용 경위, 검사/검출 경위에 대한 상세내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재
-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ID 사용 위반(미기재 등)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술

3. 해당물량 처리 결과

반 송			재수출			기타 조치한 사항
일 자	물 량(kg)	수출국	일 자	물 량(kg)	수출국	
						* 현지 폐기 등

※ 제출서류 : 대만FDA 통보서, 잔류농약검사 성적서, 수출신고필증, B/L, 반송 · 제3국 재수출 신고내역, 기타조치 내역 증빙 등

4. 재발 방지대책 및 소명

<별지 제7호 서식> 검정증명서 서식

제 호 (Certificate Number:) 검 정 증 명 서 (Certificate of Analysis)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Name/Organization)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I.D. number)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생산자 (Producer)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Name/Organization)				
	수거지 주소(Address)				
검정 목적 (Analytical Purpose)					
검정 품목 (Sample Description)					
검정 항목 (Analyzed Items)					
시료 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					
검정 기간 (Date of Test)					
검정 방법 (Analytical Method used)					
검정 결과 (Analytical Results)	결과 (Results)	단위 (Unit)	잔류허용기준(mg/kg) (MRL)		검토의견 (Remark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수출국명 (Exporting country)	
	※ 농가에서 제출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확인하였음(수출용에 한함) [Confirmed the pesticide use records submitted by farms(Only for export)]				
확인 (Affirmation)	작성자(Tested by Name) 성 명: (서명)		검토자(Approved by Name) 성 명: (서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검정한 시료에 대한 검정성적 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samples have been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98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ct, and Article 12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년 월 일 Date of Issue: day. month. year ○ ○ ○ 장 직인 예시) Chief of 000 Provincial Office [seal]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참고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본부별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FAX번호	비 고
본 사	061-931-0834	061-804-4539	수출성장지원부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40	031-8010-1096	수출유통부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032-712-2722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	033-811-1081	
충북지역본부	043-902-9526	043-711-1581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389-5017	042-720-9282	수출유통부
전북지역본부	063-904-5873	063-711-1273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3	062-944-2624	수출유통부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8	053-722-2370	수출유통부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3	051-719-9630	수출유통부
경남지역본부	055-608-5834	055-274-4810	
제주지역본부	064-900-8660	064-746-9473	